
2026년 화성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똑똑! 뭐든지학교」 운영지침

2026년 8월 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학습모임에 제공되는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똑똑! 뭐든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똑똑! 뭐든지학교”란 강사가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운영하는 장애인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② “학습자”란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학습모임에 참여하는 비장애인을 말한다.
- ③ “학습모임”이란 학습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자 모임을 말한다.
- ④ “똑똑! 뭐든지학교” 강사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말한다.
- ⑤ “현장점검”이란 “똑똑! 뭐든지학교” 강좌의 편법 및 부당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강좌를 불시에 방문하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운영)

- ① “똑똑! 뭐든지학교” 강좌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신청 강좌는 신청 자격 검토 및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신청 규모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강좌 진행은 학습자와 강사가 상호 협의한 운영계획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강좌 종류 및 제한)

강좌는 화성시가 정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좌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 1. 학교의 정규 교과목 습득을 위한 강좌
- 2. 교육 관련 장비의 이동이 불가능한 강좌
- 3. 친목 도모·여행·일회성 강좌
- 4. 영리·종교·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
- 5. 5명 이상 그룹 수업이 불가능한 강좌
- 6. 동일한 학습자와 내용으로 다른 기관 또는 사업에서 운영중이거나 지원받고 있는 동일한 강좌
- 7. 강사가 모집하는 학습모임 강좌
- 8. 기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강좌

제5조(학습모임 구성)

- ① 학습모임은 화성시 등록 장애인 5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학습자가 5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강좌를 폐강한다. 다만, 질병·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학습모임 구성원 중 1명을 대표자로 자체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학습모임 구성원은 전체 운영시간의 60%가 경과하기 전까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모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2. 학습자로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가 없는 경우
 3. 신청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
 4. 사회 통념상 학습모임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강좌 신청 및 수강)

- ① 강좌 신청은 학습자 대표가 한다.
- ②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평생학습마을 등의 학습기관(장소)을 활용하여 강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설 관리자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관에서 진행 중인 강좌는 신청할 수 없다.
- ③ 강좌 신청을 하지 않은 학습자는 강좌를 이용할 수 없다.
- ④ 강좌는 신청자격을 충족한 신청 건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⑤ 강좌 진행은 강좌 배정 후 강사와 협의한 최종 운영계획서에 따른다.

제7조(강좌 시간)

- ① 강좌별 학습 시간은 최대 20시간으로 하며, 09:00부터 22:00까지의 범위에서 주 4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사 및 휴게시간은 강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강좌 운영 기간은 개강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운영계획서상에 기재된 학습 시간은 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장소)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화성시 관내의 장애인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장소에서 운영한다. 학습장소는 학습모임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1. 강사의 사설 근무지 및 개인교습소, 학원(공방) 등 영리 행위를 위한 장소
2. 다수인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3. 교육시설 방문 등의 제한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장소
4. 시설 관리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
5.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

제9조(수강료 및 재료비)

- ① “똑똑! 뭐든지학교” 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② 교재비, 재료비, 교육장 사용료 등 제반 비용은 학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와 학습자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 ③ 재료비 등의 환불 규정은 강사와 학습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양측 당사자에 있다.

제10조(강좌 폐강 및 제한사항)

- ① 학습자가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습자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화성시 등록 장애인 5명 이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좌를 폐강한다.
- ② 강좌 진행 시 학습모임의 구성인원이 장애인 학습자 5명 이상 포함 요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폐강한다.
- ③ 회차별 출석률이 60% 미만인 상태가 3회 연속 발생한 경우에는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 ④ 학습자 개인의 출석률이 60% 미만일 경우 해당 학습자는 학습모임에서 제외된다.
단, 질병,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⑤ 청강 및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강할 경우 즉시 학습이 중단되며, 당해연도 학습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학습자의 수강 지원을 위한 보호자 또는 활동지원인력의 동석은 청강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강사)

- ① 강사는 화성시 시민강사로 등록하거나 공개모집 등 화성시가 정한 절차를 거쳐 화성시가 선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강의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최근 3년 이내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강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화성시가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 활동에 필요한 강의계획,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③ 강사가 동시에 배정받을 수 있는 강좌는 모집 회차당 2개 강좌로 제한한다. 단, 강사 수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강좌 관리)

- ① 강사는 학습자의 강좌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학습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최초 강좌가 이루어지기 일주일 이전에 강의계획서를 화성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 ② 학습자가 부담하는 재료비 또는 교육 장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및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강사는 강의 전 학습자 대표와 강좌 일정, 장소 및 운영사항을 협의하고, 첫 수업 시 신청자 명단과 실제 참여자를 확인한다.
- ④ 출석부는 학습자가 직접 서명하고 강사는 지각, 결석 등 출결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한다.
- ⑤ 화성시는 프로그램 운영 중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강사 준수 사항)

- ① 매 회차마다 출석부에 학습자 서명을 받아 출석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강좌 진행 상황을 매 회차 강좌 종료 익일까지 강좌 정보 및 수업 사진 1장, 출석부 사진 1장을 화성시가 지정한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당초 운영계획(학습자 명단, 학습장소, 시간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습자와 사전에 협의 및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최소 2일 전까지 변경 요청 및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화성시의 현장점검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⑤ 강사는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결과보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료)

- ① 강사료는 해당 연도 화성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강사료 청구는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 수업 사진을 첨부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석부(원본), 강사료 청구서류(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를 화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강의 시간 미준수 적발 시 화성시는 경고 조치 및 강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강사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출석률 60% 이상 수강하였을 경우,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16조(기타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관련 법령과 화성시의 결정에 따른다.